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·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문금주·정점식·이병진

박대출 · 서일준 · 김태호

김종양 • 주철현 • 서미화

양부남 • 서천호 • 이종욱

박희승 • 허성무 • 조계원

김 현 · 민형배 · 김남근

임미애 • 박성민 • 서영석

전진숙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금주·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7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

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	
직 등) ① (생 략)	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	2		
라 설치된 부・처・청과 다음			
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			
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			
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			
고는 설치할 수 없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10.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		
	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		
	<u>발청</u>		